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1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년 10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0년 10월 21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박도식

### 가. 개정이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10년 7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 22275호」로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2010년 7월 22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

## 나. 주요개정내용

- (1) 안 제1조에서는 제목을 복무선서로 개칭하고 별표 1 선서문의 내용도 공무원의 핵심적인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간결하게 하였고 제2항을 신설하여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로 자세히 규정
- (2)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에서는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동일하게 규정된 근무시간,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은 개정 조례에서는 삭제
- (3)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물론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새로이 삽입하여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제한규정을 두어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
- (4)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서는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을 위해 별표4를 규정
- (5) 안 제20조제6항에서는 공무원이 당해 년도의 잔여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연가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제한단서를 신설

(6) 안 제24조에서는 공무원의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사용을 위한 별표 3의 휴가 일수를 재조정하여 경조사휴가 중 결혼(본인 결혼 : 5일, 자녀 결혼 : 1일), 배우자의 출산(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새로 규정하고 본인결혼(7일 → 5일), 배우자 출산(3일 → 5일), 입양휴가(14일 → 20일) 일수 조정

(7) 안 제24조제10항에서는 현행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15주 이내일 경우에도 주도록 완화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신설

또한 같은 조 제10항 제6호를 신설하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확대,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신설,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등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맞추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동시에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었고 입법예고 등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